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5045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종진, 한규원, 김

윤희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각 31,950,000원과 그중 21,3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피고 B은 2020. 5. 21.까지, 피고 C는 2020. 6. 4.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22.부터, 피고 C는 2020.

6. 5.부터 각각 2021. 4. 8.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 F은 각각 38,700,000원과 그중 25,8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5.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4.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각 42,600,000원과 그중 21,3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1,3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 F은 각각 51,600,000원과

그중 25,8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5,8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 1)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B, C 각각 1,775/10,000 지분, 피고 D, E, F 각각 2,150/10,0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2) 원고는 2020. 1. 17.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F1)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2. 28.부터 2022. 2. 2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1,080,000,000원은 2020. 2. 28.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잔금 지급기일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20. 1. 17.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

- 1)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0. 2. 18. 피고들에게 ‘원고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기일을 조금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많이 늦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2)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20. 2. 27. ‘임대차계약을 2020. 4. 15.로 시작하되 2020. 3. 15. 중도금으로 약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음에도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② 다시 2020. 3. 2. ‘잔금 중 980,000,000원을 2020. 4. 3.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원고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계약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표시 통지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서 2020. 3. 2.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20,000,000원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1)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20. 3.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20. 3.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잔금 지급기일을 2020. 4. 6.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그 날짜에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인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2)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 3. 9.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원고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3)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20. 3. 12. 피고들에게 ‘이 내용증명을 수령하고서 3일 이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회신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4)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20. 3. 1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 3. 16. 다시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원고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5)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0. 3. 23.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인 2020. 4. 6.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의향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7호증의6)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9호증, 을 제1, 5, 7, 9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잔금 지급기일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서 적어도 그 지급기일을 2020. 2. 28. 이후의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하였음에도, 갑자기 원고가 그 지급기일을 어기고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계약금을 물취하겠다고 주장함은 물론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그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 혹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20. 3. 12.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 등 합계액을 각각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과 이에 대한 민법 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요청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그러한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피고들의 2020. 3. 2.자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1) 잔금 지급기일의 지체 여부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중 1,080,000,000원을 2020. 2. 28.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잔금 지급기일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시

상호협약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2. 18. 피고들에게 '원고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을 조금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많이 늦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20. 2. 28.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특약조항의 의미와 취지

(가) 이 사건 특약조항은 '잔금 지급기일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시 상호협약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 잔금 지급기일이 조정되기 위하여서는 ① 임차인인 원고의 요청과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협의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 문언상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들의 협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협의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를 부담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 성립 여부'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기한의 연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협의가 불가능해진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특약조항은 임차인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의 변경에 관한 상호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가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서 그로부터 수령할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특약조항은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를 다른 사람에게 적시에 임대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정으로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2) 잔금지급기일 연장 교섭 과정의 검토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20. 2. 18. 무렵부터 I을 통하여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상호협의를 시작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I에게 ‘많이 늦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다. 이후 피고들은 2020. 2. 27. I으로부터 원고의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의견을 전해듣고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2020. 3. 2. 갑자기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20. 1. 17. 무렵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I을 통해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구하기 시작한 2020. 2. 18. 무렵은 그러한 감염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넘어 1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었던 시점이다.

(다)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에 따른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를 다른 사람에게 적시에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I으로부터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서 그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 협의에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잔금지급기일을 2020. 2. 28. 이후의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무엇보다 이 사건 특약조항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상호 성실한 교섭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지급에 관한 제안을 받고서도 예정된 잔금 지급기일인 2020. 2. 28.(금요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 3. 2.(월요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어도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와 사이에 그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이행거절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2020. 2. 28. 이후의 시점으로 연장되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2020. 3. 2.부터 출근 ‘원고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이행촉구 등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의 이행최고나 잔금의 이행제공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3. 12.자 해제 의사표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20. 3. 13.부터 3일이 지난 2020. 3. 1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제에 따른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각 21,300,000원(=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20,000,000원 × 공유지분 1,775/10,000), 피고 D, E, F은 각각 25,800,000원(=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20,000,000원 × 공유지분 2,150/10,000)과 각각의 돈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금 지급일인 2020. 1. 17.부터 피고 B, D, E, F은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21.까지, 피고 C는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두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상호협력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력의무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장래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협력요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상호협력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 주거지에 관한 세입자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그러한 협력의무 발생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측의 손실을 입게 된 점, ④ 원고가 현재 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원고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금전 운용상의 손실 또한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20,000,000원 상당액 전부를 피고들 각각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그 손해배상금의 총액은 50%에 해당하는 60,000,000원(= 120,000,000원 × 50%) 정도로 감액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각 10,650,000원(= 60,000,000원 × 1,775/10,000), 피고 D, E, F은 각각 12,900,000원(= 60,000,000원 × 2,150/10,000)과 각각의 돈에 대하여 피고 B, D, E, F은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피고 C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5.부터 각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3. 12.자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0.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3. 12.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던 때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함께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각 31,950,000원(= 원상회복금 21,300,000원 + 손해배상금 10,650,000원)과 그중 21,3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피고 B은 2020. 5. 21.까지, 피고 C는 2020. 6. 4.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6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22.부터, 피고 C는 2020. 6. 5.부터 각각 2021. 4. 8.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각각 38,700,000원(= 원상회복금 25,800,000원 + 손해배상금 12,900,000원)과 그중 25,8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5.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9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4.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와 같은 범위에서 각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백우현, 판사 신철민

1) 이하 서술의 편의상 피고 F이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에서 관여한 행위 일체를 피고들이 한 것으로 실시한다.